

서울지방세무사회-세무정보(2023-02)

□ 2월의 세무일지

구 분	세 무 일 지
2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기한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기한
2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2월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 1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2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지급분 일용근로자(폐업자의 일용근로자 포함)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1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1월 폐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일용근로 제외)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봉사료 제외) ▪ 2022년 하반기(7월~12월) 비상장주식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 2022년 하반기(7월~12월)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023.01.17.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조)

- 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②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③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1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2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 ④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합니다.

- 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공급가액의 0.3%)

* 단, 신규 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제외

구 분	사 유	가 산 세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공급가액 × 0.5%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수입금액 무·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주요 변경사항(2023. 1. 4. 국세청 보도 참고자료 참조)

①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추 가 > <input type="radio"/> (한도) 월 20만 원 이내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input type="radio"/> (좌 동)

* (적용시기) '2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21년 대비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및 전체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현행	개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대상) 총급여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②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③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④전통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r> <td>⑤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21년 전체 사용금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 : 10%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2. 12. 31. ○ (공제 한도) 급여수준별 200~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액, '21년 소비증가분에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구분	공제율	①신용카드	15%	②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③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④전통시장	40%	⑤대중교통	40%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좌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22.7월~12월 사용분 80% - '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 : 20% -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 : 20% ○ (적용기한) '25. 12. 31. ○ (좌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액, ('22년 전체 소비증가분 +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구분	공제율												
①신용카드	15%												
②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③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④전통시장	40%												
⑤대중교통	40%												

*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현행	개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 ○ (소득공제율) 40% ○ (공제 한도) 300만 원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400만 원

* (적용시기) '23. 1. 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④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연 700만 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난임시술비 < 추 가 >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 추 가 >	<input type="checkbox"/>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좌 동)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적용시기) '2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기부활성화를 위해 '22년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세액공제율 <input type="checkbox"/> 1천만 원 이하분 : 20% 1천만 원 초과분 : 35% <input type="checkbox"/> '21년에 한해 공제율 5% 상향* * 15% → 20%, 30% → 35%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한시 상향 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2년 말까지 1년 연장

*(적용시기) '22. 1. 1. ~ '22. 12. 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⑥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5% (17%)로 상향

현행	개정
<input type="checkbox"/> 월세액 세액공제 <input type="radio"/>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input type="radio"/>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자 <input type="radio"/> (공제 한도) 750만 원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상향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자 <input type="radio"/> (좌 동)

*(적용시기) '23. 1. 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⑦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및 분할납부 특례 기준금액을 연간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현행	개정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 특례 <input type="radio"/>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input type="radio"/> (특례내용) ① (비과세)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행사 이익 비과세 ② (분할납부) 연간 3천만 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1. 12. 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radio"/>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 ①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천만 원 → 5천만 원 ② (분할납부) 비과세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4. 12. 31.

*(적용시기)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⑧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청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현행	개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input type="radio"/>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input type="radio"/> (감면율, 한도) 70% (청년 90%), 연간 150만원 <input type="radio"/> (감면 기간) 3년 (청년 5년) <input type="radio"/> (대상 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input type="radio"/> (적용 기한) '21. 12. 31.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여성 요건 <input type="radio"/>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	<input type="checkbox"/> 적용 기한 연장] (좌 동) <input type="radio"/> '23. 12. 31.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좌 동)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 (적용시기)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⑨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기한 연장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 연장

현행	개정
<input type="checkbox"/>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input type="radio"/> (대상)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input type="radio"/>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input type="radio"/> (감면대상)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1. 12. 31.	<input type="checkbox"/>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 (청년)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 (그외)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4. 12. 31.

* (적용시기) '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⑩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금액의 40% (6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현행	개정
<신설>	<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input type="radio"/> (가입 요건)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 판단 <input type="radio"/> (가입 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병적증명서를 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input type="radio"/>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input type="radio"/> (세제 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제외)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하는 과세기간 <input type="radio"/>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납입금액의 6%) 추징 <input type="radio"/> (적용 기한) 2023. 12. 31.까지 가입분 ※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⑪ 장애인 증명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항목 추가

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현행	개정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input type="radio"/>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input type="radio"/> (제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보험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교육비 등 <추가> <input type="radio"/> (자료집중기관) - (연금계좌 납입액·보험료) 은행연합회·보험협회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교육비 등)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추가>	<input type="checkbox"/>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제출항목 확대 - (좌 동) - 장애인 증명서류 <input type="radio"/> 자료집중기관 확대 - (좌 동) - (장애인 증명서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적용시기)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시 체크 포인트(2023. 1. 4. 국세청 보도 참고자료 참조)

①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내 용	
	총급여액	공제액(2,000만 원 한도)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액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원(50세 이상자는 600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7%, 7,000만 원 이하자는 15%	

②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2000. 12. 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 12. 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③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감수 : 서울지방세무사회 오의식 연수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김 완 일 올림